(주)모프인터랙티브 개인정보보호 정책

Morph Interactive

문서관리번호	2023-M3-P1
최초 제정일	2022.03.03
담당자(부서)	김정열(운영팀)

목 차

l. 개인정보보호 규정	······ 02
II.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	······ 08
Ⅲ. 정보보안 조직	······ 08

l. 개인정보보호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,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등 정보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, 고객의 개인정보를 오남용, 훼손, 변조, 유출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㈜모프인터랙티브의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며, 계약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정보자산에 접근하는 모든 제3자에게도 적용된다.

제3조(용어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개인정보"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
 - ①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
 - ②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 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 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 - ③ ①항 또는 ②항을 제 1호의 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"가명정보"라 한다.)
- 1-1. "가명처리"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개인정보 처리"란 개인정보를 수집, 생성, 연계, 연동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- 3. "정보주체"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 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
- 4. "개인정보 보호책임자"란 감독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 지는 자로서, 시행령 제 3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 5. "개인정보파일"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(集合物)을 말한다.

제4조(개인정보 보호 원칙) ㈜모프인터랙티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, 그 목적에 필 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.
- 2.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- 3.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,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4.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 가 침해 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- 5.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, 열람 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.
- 6.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7.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,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8. 보호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 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개인정보 보호 조직

제5조(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의무) ①보안담당자는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- 1.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
- 2.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내부관리시스템 구축

- 3. 고객정보 유출 등의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적극적인 피해구제
- 4.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전사차원의 교육을 진행
- 5. 고객개인정보보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모의 훈련 계획 및 시행
- 6. 기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
제6조(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) ①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②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, 지체없이 부서장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주관하는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.

제3장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

제7조(개인정보 주체의 권리)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.

- 1.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2.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,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
- 3.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(사본의 발급 포함)을 요구할 권리
- 4.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, 정정 · 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
- 5. 개인정보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

제8조(개인정보의 열람)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제9조(개인정보의 정정·삭제) ①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.

②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정 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 · 삭제 등 필요 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

제10조(개인정보의 파기)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,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

제11조(안전조치의무)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· 도난 · 유출 · 위조 ·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· 관리적 및 물리적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2조(보안지침) ①모든 임직원은 입사, 퇴사 및 연봉계약 시 정보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.

- ②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회사 정보자산으로의 접근을 허용할 때에는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제반 규정 준수에 대한 정보보호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.
- ③회사 내 모든 시설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구역·보호구역·통제구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
- ④제3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모든 정보자산을 임의로 반출해서는 아니된다.

⑤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을 수행하고, 이상징후 발견 시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에게 보고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.

⑥개인정보는 사전에 인가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용도 외의 임의 목적으로 방치되거나 부당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그 생산, 유통, 보관, 폐기 등의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장 보안사고

제13조(개인정보 유출) 개인정보의 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- 1.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, 이동식 저장장치,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
- 2.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
- 3.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, 기타 저장 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
- 4.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된 경우

제14조(개인정보 유출 통지)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. 다만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, 취약점 점검 보완,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.

- 1.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
- 2.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

- 3.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
- 4.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
- 5.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
- ③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,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.
 - 1.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
 - 2.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
- ④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유출사고가 발생한 시점 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실제 유출 사고를 알게 된 시점을 입증하여야 한다.

제6장 보안 점검 및 교육

제15조(시스템 모니터링) ①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의 관리 시스템 및 실태점검을 통하여 취약점을 개선하여야 한다.

- ②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자체 점검 및 보안감사를 위한 감사 대상, 절차, 방법 등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- ③개인정보보호 자체점검은 일단위로 매일 실시하며 개인정보보호 자체검사는 연1회 실시한다.
- ④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 및 보안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16조(개인정보보호 교육)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03월 03일부로 시행한다.

II. 개인정보보호 체크리스트

구분	항목	답변	
관계법률 및 - 법령 준수 _	관련 법률 및 법령 등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가	Υ	
	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의 내용과 실제 수집하는 항목이 동일한가	Υ	
	개인정보처리방침을 명문화하여 공개하고 있는가	Υ	
개인정보 취급	개인정보 목적 외 제공 시 암호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가	Υ	
	개인정보 보관 시 암호화 등의 보안조치가 있는가	Υ	
	불필요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였는가	Υ	
개인정보 위탁	개인정보 위탁 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는가	Υ	
	개인정보 위탁 시 그 내용 및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였는가	Υ	
	개인정보 취급을 위탁받은 자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업무를 취급 위탁받은	Υ	
	사업자가 동일한가?	ſ	
	개인정보에 대하여 접속기록을 보관하고 점검하고 있는가	Υ	
보안지침	제3자 및 모든 임직원은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하였는가	Υ	
	개인정보에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있는가	Υ	
점검 및 교육	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가	Υ	
	접근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	Υ	
	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	Υ	

Ⅲ. 정보보호 조직

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조직도

[모프인터랙티브 개인정보관리 조직도]

